nepes 윤리규정



개정 일자: 2021.06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윤리규정 목차

제1장	총칙	4
제2장	윤리강령	4
제3장	윤리규정	4
	제1절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절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절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절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제5절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6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TII 4 T L		0
세4성	윤리경영 운영기구	9
	제2절 윤리위원회 구성	
	제3절 윤리위원회 기능	
	제4절 윤리위원회 소집	
	제5절 의사결정	
부칙		10
볔천1	윤리경영 관리기준표	11
별첨2	윤리경영 위험성평가 등급표	12
별첨3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의무 및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13
볔천4	유리경영 운영기구 조직도	14



	문서번호	NPS- 07 - 01
사 내 규 정	Rev.	2
	제정일자	2015.07.01
윤리규정	개정일자	2021.06.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네패스(이하 '회사')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윤리적 ·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노동인원을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네패스 윤리규정은 국내 · 국제 법률과 * ISO26000, UNGC, EICC 등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3조 (윤리강령)

회사 임직원은 고객, 동료, 협력업체, 경쟁자, 정부 및 사회단체들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직업적·개인적 윤리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인원을 존중하며, 윤리강령 (노동인권 포함)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취한다.

임직원은,

- 1.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 2. 업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각자의 권리와 품위를 존중하고,
- 3.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 4. 네패스와 다른 임직원의 명예에 손실이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 5.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모범이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행동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켜 나간다.

제3장 [윤리규정]

제4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고객만족 경영
 - (1)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한다.
 - (2) 고객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사 내 규 정문서번호NPS- 07 - 01Rev.2제정일자2015.07.01윤리규정개정일자2021.06.01

- (3)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2.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제공한다.
 -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 3. 고객 보호
 - (1) 고객의 사전 승인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3)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제5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주주 투자수익 보호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2. 상호신뢰
 - (1)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 (2)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6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임직원 존중
 -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각각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2)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3) 임직원의 신체·정신적·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생리학적, 심리학적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4)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5) 비윤리 · 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공정한 대우
 - (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 인종, 피부색, 결혼여부, 언어, 민족, 사회적 지위, 장애, 재산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3. 인재의 육성과 창의성 촉진

- (1) 회사는 임직원에게 교육, 기술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에게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4. 사명의 완수

- (1) 회사와 임직원은 공명정대하고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한다.
- (2) 임직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3)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 보호하고,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5. 안전 및 위험 예방

- (1) 회사는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2)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작업장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3)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직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7조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1.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제반 법률, 사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윤리적 상황에 처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 (4)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사업부/본부/팀) 내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 (5) 관련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공정한 직무수행

-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수취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물적·지적 재산을 유용·횡령하는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 (3) 임직원은 직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상사는 부하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부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3. 자기계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4. 임직원 상호 간의 윤리
 - (1) 기본 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 (2)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금한다.
 - (3) 임직원 상호 간 부당한 청탁, 알선, 금전거래 행위 및 개인적 금품수수행위를 금한다. 단, 임직원 간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생일, 전배, 경조사 등) 내에서 가벼운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한다.
 - (4)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5)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5. 회사 재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 (1) 회사 재산의 개인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시간 및 회사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2) 비공개정보의 이용
 - ①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② 고객 및 사내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3) 보안유지

- 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자료 등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지적 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6. 안전 및 위험 예방

- (1)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3)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조치를 실시하고, 전력을 다해 다른 임직원의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8조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공평한 기회 제공
 -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2) 협력사 등록·선정은 제품 및 가격, 신뢰성 등을 기초로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

- (1)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협력사의 제반 경영활동 노력을 지원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게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호 보완한다.

3. 상호 발전 추구

- (1)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고, 부단한 혁신과 노력으로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 (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제9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국가에 대한 책임
 - (1) 회사는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 (2)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1)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2)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 (3)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정치활동 관여 금지

- (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2)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거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4. 친환경경영

- (1) 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성과를 개선한다.
- (3)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 (4)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4장 [윤리경영 운영기구]

제10조 (운영목적)

회사는 기업윤리 실천의 기업문화화를 위해 실무 실천 기구로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1조 (구성)

- ① 위원장: CEO
- ② 위 원:사업총괄 및 전 사업부장/실장
- ③ 간 사:인사담당자
- ④ 배 석: 자문위원 (사외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윤리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제12조 (기능)

- (1) 윤리규정 실천 지침 제정 및 개폐 심의/의결
- (2)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협의
- (3) 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윤리딜레마에 대한 토론/협의
- (4) 현업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윤리 실천 사례 공유

제13조 (소집)

위원회는 반기 1회 (마지막 월 셋째 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간사가 회의를 소집한다. 단, 필요 시 1인이상의 윤리위원의 요청으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결정)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간사 및 배석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 (2) 부의 안건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실무자를 참석시켜 의견의 청취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4) 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의안을 통보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부칙]

1.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 부로 적용·실시한다.

2. 위임규정

본 규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규정 실천지침서'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3. 윤리규정의 활용

- (1) 윤리규정을 업무에 적용할 때 윤리규정과 윤리규정 실천지침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CEO가 위원장이며, 위원은 사업총괄 및 전 사업부장/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둔다. 단, CEO는 사업총괄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
- (2) 윤리규정은 이전의 유사 규정과 중복될 경우 이에 우선한다.
- (3) 윤리규정의 위반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은 보장된다.

4.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서를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별첨 1 : 윤리경영 관리 기준표

구분	관리 항목	관리 주체	관리 주기	승인권자	위반/미흡 항목 관리
위험성 평가	▷윤리경영 주요 5개 항목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항목) 등급 ▷윤리경영 종합평가 등급	인사부서	년 1회	CEO	▷목표 대비 실적 지표가 미흡한 경우, 개선 계획 수립 후 경영지원실장의 인가를 받은 후 실행
목표 관리	▷목표 대비 실적 지표 (당해년도 윤리경영 실천 항목, 임직원 교육, 관리자 교육, 위험성평가등급 등)	인사부서	년 1회	인사담당자	▷목표 대비 실적 지표가 미흡한 경우, 개선 계획 수립 후 경영지원실장의 인가를 받은 후 실행
경영검토 보고서	▷윤리경영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 내용 (목표 대비 실적 지표, 위험성 평가 등)	인사부서	년 1회	CEO	
자가 평가	▷품질부서에서 고객사 요구 스펙 이상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시행	품질부서	년 1회	내부심사 승인권자	▷품질부서 내부심사 미완료 항목 관리프로세스에 따름.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별첨 2: 윤리경영 위험성 평가 등급표

1. 영역별 등급

종합평가		추가평가 반영 방법
'1단계'에	답한 경우	● 추가질문의 응답률과 상관없이 '1단계'확정
'2단계'에	기준율	● 전체 추가질문 중 "예" 또는 "4점~5점"에 답한 응답이 50% 이상인 경우 종합질문 2단계 유지
답한 경우	50%	● 만약 50% 미만인 경우 2단계 → 1단계로 하락
'3단계'에	기준율	● 전체 추가질문 중 "예" 또는 "4점~5점"에 답한 응답이 75% 이상인 경우 종합질문 3단계 유지
답한 경우	75%	● 만약 75% 미만인 경우 3단계 → 2단계로 하락
'4단계'에	기준율	● 전체 추가질문 중 "예" 또는 "4점~5점"에 답한 응답이 75% 이상인 경우 종합질문 4단계 유지
답한 경우	90%	● 만약 90% 미만인 경우 4단계 → 3단계로 하락
법률 위		■ 법률 위반 및 노사관계 마찰이 단 1회라도 있는 경우 상기 표에서 결정된 단계에서 또 다시 1단계
노사관계 마찰 여부		하락

2. 종합등급

구간	단계
4.0	AA
3.9~3.5	A
3.4~3.0	ВВ
2.9~2.5	В
2.4~2.0	СС
1.9~1.5	С
1.4~1.0	D



윤리규정

문서번호	NPS- 07 - 01
Rev.	2
제정일자	2015.07.01
개정일자	2021.06.01

#별첨 3 :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의무 및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전화, 이메일, 웹페이지, QR 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을 제보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주요 신고의무 비윤리・불법행위 유형

- 직무와 관련, 이해관계자 (동료, 고객, 공급자 등)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이해관계인 (자신, 가족, 친척 등)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 (동료, 고객, 공급자 등)와 공동투자, 공동 재산취득 및 금전 등의 자산대차행위
-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도모
- 비공개 정보의 유출 행위
- 불합리한 차별 행위
-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 기타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제반 행위

■ 내부 고발 보호 제도 (별도 규정 참고)

모든 네패스 및 협력업체, 거래업체 임직원은 누구든지 비윤리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내부 고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네패스 임직원은 내부 비리와 부정 등 비윤리행위를 인지 시에는 지체 없이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상사는 부하직원의 비리, 부정행위를 덮을 수 있다.

- ·목적 : 네패스 공동체의 이익을 보전하고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네패스 임직원은 비위 사실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인지 시에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 고발 방법 : 전화, 구두, 서신, 이메일, 웹페이지, QR 코드 등을 통해 신고
 - 신분보장 : 내부 고발자는 누구든지 이 절차에 의한 고발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 행위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보상 및 포상 : 내부 고발의 내용이 증대하여 동 고발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는 고발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문서번호	NPS- 07 - 01
사 내 규 정	Rev.	2
	제정일자	2015.07.01
윤리규정	개정일자	2021.06.01

#별첨 4: 윤리경영 운영기구 조직도

